



**New York Lawyers  
For the Public Interest, Inc.**  
151 West 30th Street, 11th Floor  
New York, NY 10001-4017  
Tel 212-244-4664 Fax 212-244-4570  
TDD 212-244-3692 www.nylpi.org

## 취업할때 받는 차별과 그에 관한 법

### 뉴욕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주 질문하는 것들

#### (1)뉴욕시에는 어떤 법으로 장애가 있는 고용인이나 장차 취업하려는 사람들을 보호하나?

고용주의 규모나 사업 성격에 따라 장애가 있는 미국인들을 위한 법(ADA)과 1973년에 제정된 장애인을 사회로 복귀(갱생)시키는 법의 501 조항과 505 조항, 뉴욕 주 인권에 관한 법, 그리고/또는 뉴욕시 인권에 관한 법이 적용된다.

ADA 법은 15명 이상의 고용인들을 채용하고 있는 고용주에게 해당된다. ADA 법은 미국 정부 기관과 실질적인 회원제 운영하는 사교 클럽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뉴욕주나 뉴욕시의 인권에 관한 법은 둘다 4명 이상의 고용인들을 채용하고 있는 고용주에 해당된다.

1973년에 제정된 장애인을 사회로 복귀(갱생)시키는 법의 501 조항과 505 조항은 실질적으로 연방 기금을 받는 고용인들과 장애 문제로 차별받는 모든 연방 고용인들을 보호한다.

연방 정부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고용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다른 법들도 있다. 예를 들면, 1978년에 제정된 시민을 위한 행정 개혁 법령(CSRA)에 따라 연방 정부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은 인력 관리에 따른 결정에 있어서 장애 때문에 차별받는 것을 금지 하고 있다.. CSRA 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www.osc.gov/ppp.html](http://www.osc.gov/ppp.html) 를 방문하여라. 연방 정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www.eeoc.gov/federal/index.html](http://www.eeoc.gov/federal/index.html) 를 방문하여라.

#### (2) 본인이 장애인 인가?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여러 종류의 법들은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아래 명시한 그 어떤 법도, 예를 들어 불법적으로 현재 마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지는 않는다.

### 장애가 있는 미국인들을 위한 법(ADA)

2008 년에 통과된 ADA 개정 법령(ADAAA)에 따라, 의회는 법원에서 축소하여 정의한 장애에 대한 개념을 변경하였다. ADAAA 에 따라,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이 차별받는 것을 금지할 목적으로 ADA 에서는 장애에 관한 개념을 예전에 ADA 에 따른 법원의 판결보다 좀더 광범위하게 규정 하였다.

ADA 에 서 규정한 장애인이란:

- a. 주된 일상 생활을 하는데 실제로 한가지 이상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건강이 안 좋은 사람;
- b. 그렇게 좋지 않은 건강에 대한 병력이나 기록이 있는 사람이거나;
- c. 건강이 나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식별할 수 있는 사람.

장애가 있는 미국인들을 위한 법(ADA)에 따르면 주된 일상 생활이란, 건강을 위해 자신을 돌보고, 손으로 움직이는 일을 할 수 있으며, 보고, 듣고, 먹고, 자고, 걷고, 서고, 들어 올리고, 구부리고, 말하고, 숨쉬고, 배우고, 읽고, 집중하고, 생각하고, 대화하고 일하는 것을 말한다. 추가로, 주된 일상 생활에는 면역 체계의 기능, 정상적인 세포의 성장, 소화 기관, 방광, 신경, 두뇌, 호흡, 순환, 내분비 그리고 생식 기능등 신체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또는 규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

*ADA 에는 건강이 좋지 않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두 명시하지는 않았다. 대신, 나쁜 건강으로 인해 개인이 주된 일상 생활을 하는데 실제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정말로 장애가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추가로, 2008 년에 통과된 ADA 개정 법령(ADAAA)에는 건강이 나쁜 상태가 활동성이며 현재 진행중이어서 주된 일상 생활하는데 제한을 받는다면, 우연히 나타나거나 가끔씩 발생하여도 그런 건강이 나쁜 사람들을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발작이 일년에 몇번 일어날지라도, 주된 일상생활을 하는데 실제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간질병이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한다. 비슷한 경우, 여러 조직이 경화되는 사람도 어쩌다 발병하면 주된 일상 생활을 하는데 실제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연히 증세가 나타나더라도 장애가 있는 미국인들을 위한 법(ADA)에서는 장애가 있다고 규정 한다.

2008 년에 통과된 ADA 개정 법령(ADAAA)에 따르면, 약물 복용, 의료품, 치과 보철, 보청기, 산소 치료 장비 그리고 다른 장비들을 치료의 수단으로써 사용하여 나쁜 건강 상태를 좋게 해줄수 있는 효과를 주어도 이 사람이 장애가 있다 없음을 결정하는데는 그러한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보조 기구를 사용했을 때는 걸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조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은 장애가 있다고 한다. 비슷한 예로, 장비를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호흡을 할수 있더라도 산소 치료 장비 없이는 호흡할 수가 없는 사람은 장애가 있다고 한다. 이런 조항의 예외로는, 일반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여 시력이 나쁜 건강 상태를 좋게 해줄수 있는지 그 효과를 따져 시력이 안좋은 사람이 장애가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데 참고한다. 다른 말로, 일반 안경을 사용하여 시력을 완전히 교정할 수가 있다면 시력이 안좋은 그사람은 장애가 있는 미국인들을 위한 법(ADA)에서는 장애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장애가 있는 미국인들을 위한 법(ADA)에서 “장애인이라고 규정”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건강이 안좋아 주된 일상 생활을 하는데 제한을 받거나 남들이 그렇게 인식하더라도, 인식하는 것과 실제로 건강이 안좋은 것을 근거로 장애자에게 금지하고 있는 조치들로 부터 장애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2008년에 통과된 ADA 개정 법령(ADAAA)에서는 명백히 규정하였다. “장애인이라고 규정”해서 보호하는 것은, 실제로 건강이 안 좋거나, 6개월 또는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건강이 안 좋은 상태를 말하며, 경미한 또는 일시적으로 건강이 안 좋은 것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단지 다리만 부러지고 다른 건강에 지장이 없는 사람은 장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장애가 있는 미국인들을 위한 법(ADA)에 따르면 장애가 아니고 그냥 건강이 안좋은 경우에도 뉴욕시 인권법에서는 장애인이라고 간주될 수도 있다.

### 1973년에 제정된 장애인을 사회로 복귀(갱생)시키는 법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장애가 있는 미국인들을 위한 법(ADA)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다.

### 뉴욕주 인권법

뉴욕주 인권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 된다:

- 해부 구조적, 생리학적, 유전자적 그리고 신경 계통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신체 기능을 할 수 없어서 나타난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의학적인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실험 결과 질병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증명할 수 있을때
- 그러한 건강이 안좋은 기록이 있을때

- 그렇게 건강이 안 좋다고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상태

일반적으로, 뉴욕주 인권법에서 장애인에 대한 규정은 장애가 있는 미국인들을 위한 법(ADA)에서 말한 규정과 비슷하다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다.

### 뉴욕시 인권법

뉴욕시 인권법에는 “신체적, 의학적, 정신적 혹은 심리적으로 건강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런 안 좋은 건강 상태에 대한 병력이나 기록”이 있을 때 “장애”라고 규정한다.

#### **(3) 장애 문제 때문에 현재의 고용주나 앞으로 고용주가 될 사람이 차별하였다고 생각 한다면 누구에게 알려야 하나?**

무엇을 소송할 것인가에 따라 아래 명시한 기관중 한곳에 소송을 의뢰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하는데 차별 받았다는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한군데 이상의 기관에다 소송을 의뢰할 수 없다. 한곳 이상의 기관에 소송을 의뢰할 경우, 이중으로 소송을 의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아래에서 설명한 것 처럼), 소송을 접수한 두번째의 기관은 차별 받았다고 주장하는 소송건을 이미 다른 기관에서 조사중이라는 이유로 보통 접수를 받지 않는다.

이런 규정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 이중으로 소송을 의뢰하는 것이다. 이중으로 소송을 의뢰함으로써 뉴욕주 인권국(NYSDHR)이나 뉴욕시 인권 위원회(NYCCHR)에 소송을 접수할 수 있으며, 장애가 있는 미국인들을 위한 법(ADA)처럼 평등하게 취업하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위원회(EEOC)가 집행하는 연방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다면, 처음 소송을 의뢰 받은 기관에서는 평등하게 취업하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위원회(EEOC)에도 함께 같은 소송건을 접수 시켜 준다.

유사한 예로, 평등하게 취업하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위원회(EEOC)에 소송을 접수 시킬 경우 EEOC 에 뉴욕주 인권국(NYSDHR)이나 뉴욕시 인권 위원회(NYCCHR)에 이중으로 소송을 접수 시켜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중으로 소송을 접수 시키면, 연방법, 주 혹은 해당 지역의 법에 따라 권리를 보장 받으며, 소송을 접수한 기관에서는 조사할 의무가 있다.

#### **평등하게 취업하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위원회(EEOC)**

**EEOC 는 어떤 법을 근거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하여 집행하나?**

평등하게 취업하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위원회(EEOC)는 장애가 있는 미국인들을 위한 법(ADA)과 (연방 고용인을 위하여) 1973년에 제정된 장애인을 사회로 복귀(갱생)시키는 법의 501 조항과 505 조항을 집행한다.

**만일 장애가 있는 미국인들을 위한 법(ADA)에 따라 취업하는데 차별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평등하게 취업하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위원회(EEOC)에 소송을 접수 시켜야 하나?**

공정하게 임금 지불을 요구하는 법령을 제외하고, 평등하게 취업하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위원회(EEOC)에서 집행하는 모든 법에 따르면, 법원에 개별적으로 민사 소송을 접수하기 전에 평등하게 취업하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위원회(EEOC)에 먼저 소송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뉴욕에는, 평등하게 취업하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위원회(EEOC)는 뉴욕주 인권국(NYSDHR)과 뉴욕시 인권 위원회(NYCCHR)과 함께 이중으로 소송을 접수 받는다. 그러므로, 뉴욕주 인권국(NYSDHR)이나 뉴욕시 인권 위원회(NYCCHR) 두 기관중 한곳에 가서 소송을 접수 시킬 수 있으며 그 기관에게 평등하게 취업하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위원회(EEOC)에도 함께 접수시켜 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 평등하게 취업하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위원회(EEOC)에 300 일 이내에 소송을 접수 시킬 목적으로, 아래에서 설명한 것처럼, 연방 소송을 제기하거나 차별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시점에서 부터 300 일 이내에 뉴욕주 인권국(NYSDHR)이나 뉴욕시 인권 위원회(NYCCHR)에 이중으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1973년에 제정된 장애인을 사회로 복귀(갱생)시키는 법의 501 조항과 505 조항에 따라 보호받는 연방 고용인이, 취업하는데 차별당한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면 맨 먼저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나?**

연방 고용인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과정이 있다. 평등하게 취업하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위원회(EEOC)에 소송을 접수하기 전, 연방 고용인들은 차별 행위가 일어난지 45 일 이내에, 또는 인력 관리의 결정에 따라 그 행위가 유효한 날짜로 부터 45 일 이내에 반드시 평등하게 취업하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상담원을 만나야 한다.

연방 고용인의 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ww.eeoc.gov/federal/index.html](http://www.eeoc.gov/federal/index.html) 을 방문하거나 평등하게 취업하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위원회(EEOC)에 연락해라.

**장애가 있는 미국인들을 위한 법(ADA)에 따라 소송 제기를 할때, 평등하게 취업하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위원회(EEOC)에 차별에 관한 소송을 언제 접수 시켜야 하나?**

어떤 소송을 접수하나에 따라 엄격한 시간 제한이 있다. 뉴욕주 에서는 평등하게 취업하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위원회(EEOC)에 300 일 이내에 소송을 접수 시켜야만 한다.

법적인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차별 당했다고 의심이 들면 즉시 평등하게 취업하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위원회(EEOC)에 연락하는 것이 최선이다.

**평등하게 취업하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위원회(EEOC)에 어떻게 연락하나?**

현재 EEOC 의 뉴욕시 지국 사무실은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33 Whitehall Street, 5<sup>th</sup> Floor  
New York, NY 10004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오전 9 시에서 오후 3 시 사이에 평등하게 취업하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위원회(EEOC)에 전화 연락할 수 있다.

**일반 문의나 신규 소송건** : 1-800-669-4000

**TTY(청각 장애) 번호** : 1-800-669-6820

소송을 접수하는데 필요한 것(예를 들면, 통역사, 필요한 양식을 쉽게 만든 인쇄물) 을 원하는 사람은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평등하게 취업하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위원회(EEOC) 지역 사무실에 알려줘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www.eeoc.gov](http://www.eeoc.gov) 를 방문하여라.

## 뉴욕주 인권국

**뉴욕주 인권법에 위반되는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뉴욕주 인권법에 위반되는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되면, 주 법원에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뉴욕주 인권국에 소송을 접수 시킬 수가 있다.

**주 법원에 소송을 의뢰하거나 뉴욕주 인권국에 소송을 의뢰할 때 어떤 시간 제한이 있나?**

뉴욕주 인권법에 따라 주 법원에 소송을 의뢰할 경우 그런 차별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뉴욕주 인권법에 따라 뉴욕주 인권국에 소송을 의뢰한다면, 그런 차별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일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기억하라, 뉴욕주 인권국(NYSDHR)에 소송을 제기하고, 평등하게 취업하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위원회(EEOC)와 함께 NYSDHR 에 이종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장애가 있는 미국인들을 위한 법(ADA)에 따라 연방 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진행시키기 위하여 평등하게 취업하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위원회(EEOC)에서 소송 접수에 필요한 300 일 간의 시간 제한을 지켜야 한다. 비슷한 예로, 평등하게 취업하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위원회(EEOC)에 소송을 의뢰 했고 EEOC 로 하여금 뉴욕주 인권국(NYSDHR)에도 이종으로 소송을 부탁했다면 NYSDHR 를 통해 누릴수 있는 권리를 찾기위해서라도 일년의 시간 제한에 맞게 소송을 하여야 한다.

### 뉴욕주 인권국(NYSDHR)에 어떻게 연락하나?

뉴욕시에는 뉴욕주 인권국 사무실이 여러군데 있다.

#### BRONX

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  
One Fordham Plaza, 4<sup>th</sup> Floor  
Bronx, New York 10458  
Telephone (718)741-8400  
infoBronx@dhr.state.ny.us

#### BROOKLYN

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  
55 Hanson Place, Room 304  
Brooklyn, New York 11217  
Telephone (718)722-2856  
infoBrooklyn@dhr.state.ny.us

#### LOWER MANHATTAN, 42 가 아래, 그리고 STATEN ISLAND

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  
20 Exchange Place, 2<sup>nd</sup> Floor  
New York, New York 10005

Telephone (212)480-2522  
infoLowerManhattan@dhr.state.ny.us

## UPPER MANHATTAN, 42 가 위, 그리고 BRONX

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  
Adam Clayton Powell State Office Building  
163 West 125<sup>th</sup> Street, 4<sup>th</sup> Floor  
New York, New York 10027  
Telephone (212)961-8650  
inforUpperManhattan@dhr.state.ny.us

더 자세한 사항은 [www.nysdhr.com](http://www.nysdhr.com) 을 방문하여라.

### 인권에 관한 뉴욕시 위원회

**뉴욕시 인권법에 위반되는 차별을 당했다고 느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만일, 뉴욕시 인권법에 위반되는 차별을 당했다고 느끼면 주 법원에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뉴욕시 인권 위원회에 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주 법원에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뉴욕시 인권 위원회에 소송을 의뢰할때 어떤 시간 제한이 있나?**

뉴욕시 인권법에 따라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런 차별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3 년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뉴욕시 인권법에 따라 뉴욕시 인권 위원회에 소송을 의뢰한다면, 그런 차별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일년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기억하라, 뉴욕시 인권 위원회(NYCCHR)에 소송을 제기하고, 평등하게 취업하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위원회(EEOC)와 함께 NYCCHR 에 이종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장애가 있는 미국인들을 위한 법(ADA)에 따라 연방 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진행시키기 위하여 평등하게 취업하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위원회(EEOC)에서 소송 접수에 필요한 300 일 간의 시간 제한을 지켜야 한다.

비슷한 예로, 평등하게 취업하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위원회(EEOC)에 소송을 의뢰 했고 EEOC 로 하여금 뉴욕시 인권 위원회(NYCCHR)에도 이종으로 소송을 부탁했다면 NYCCHR 를 통해 누릴수 있는 권리를 찾기위해서라도 일년의 시간 제한에 맞게 소송을 하여야 한다.

**뉴욕시 인권 위원회에 어떻게 연락 하나?**



뉴욕시 인권 위원회는 아래 장소에 있다.

#### BRONX

New York City Commission on Human Rights  
1932 Arthur Avenue, Room 203A  
Bronx, New York 10457  
Telephone (718)579-6900

#### BROOKLYN

New York City Commission on Human Rights  
275 Livingston Street, 2<sup>nd</sup> Floor  
Brooklyn, New York 11217  
Telephone (718)722-3130

#### MANHATTAN

New York City Commission on Human Rights  
40 Rector Street, 10th Floor  
New York, New York 10006  
Telephone (212)306-5070

#### QUEENS

New York City Commission on Human Rights  
136-56 39th Avenue, 3rd Floor  
Flushing, New York 11354  
Telephone (718)886-6162

#### STATEN ISLAND

New York City Commission on Human Rights  
60 Bay Street, 7th Floor  
Staten Island, New York 10301  
Telephone (718)390-8506

뉴욕시 인권 위원회에 소송을 의뢰할 경우 311 이나 (212)306-7450 으로 전화해라.

소송건에 관한 면담을 위해서는 미리 예약하는 것이 필요하다. 뉴욕시 인권 위원회 지국 사무실에  
올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관이 전화로 소송건에 관하여 면담을 하거나 가정 방문을 마련할 것이다.

소송건에 관한 면담 시간을 약속하기 위하여 (212)306-7450 으로 전화 해라

더 자세한 사항은 [www.ci.nyc.ny.us/html/cchr/home.html](http://www.ci.nyc.ny.us/html/cchr/home.html) 을 방문 하여라.

이 설명서는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법적인 근거나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Translated by Asian/American Center of Queens College with  
Funds Provided by Queens Borough President Helen Marshall  
(No alterations on this document are permitted)